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5. 1.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홍 승 령	전 화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김 영 은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노 혜 원	전 화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044-200-2295
법무부	과 장	반 재 열	전 화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 당 자	강 성 록		02-2110-4076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 준 헌	전 화	044-202-3725
방역총괄팀	담 당 자	이 정 우		044-202-3813
보건복지부	과 장	최 종 희	전 화	044-202-3070
자립지원과	담 당 자	김 영 식		044-202-3074
행정 안전 부	과 장	이 방 무	전 화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 당 자	강 민 철		044-205-3706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최 진	전 화	044-203-2641
문화기반과	담 당 자	이 광 윤		044-203-2638
산업통상자원부	과 장	이 귀 현	전 화	044-203-4020
무역정책과	담 당 자	이 주 노		044-203-40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운영 재개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











- 아울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 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운영 재개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자격 체류자(약 39만 명)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이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등 확실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해 다행이며, 이는 지방 자치단체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다만 국내 이동이 늘어난 연휴(4.30~5.5) 동안 감염증 전파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약 39만 명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한다.











- 법무부에서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하여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코로나19 지침상 사례 정의에 해당 시 무료 선별검사 및 확진 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의무 면제 (1.31 시행)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 \* 민간 무료 진료소 등에서 요청 시 지역 보건소는 개인 보호구 및 진단도구(키트) 등 필요 물품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주거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 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 □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 거리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해왔고, 대구 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 \*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노숙인 복지시설 등 대응 지침(2.4) (지자체) 거리 노숙인 대상 현장보호활동 강화, 쪽방 상담소에서의 발열체크, 주 1회 방역실시, 대구 지역 시설 전수검사 등 (581명, 1명 확진 2.26)











- □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X-ray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해,
    -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같은 방역 취약 집단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집단 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할 수 있어, 긴급 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운영 재개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4.19~)'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 이번 운영 재개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24개**\*관이 포함되며,
    - \*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도서관 3개(중앙, 어린이청소년, 세종)
    -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판단해 재개관하도록 권고한다.
  -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가 가능하고, 관람객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 관람 위주로 관람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며,
    - ※ 단체관람, 단체해설을 포함한 모든 전시 해설 서비스 및 교육·행사는 중단
    - 시간대별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시스템(온라인, 전화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 집중 방지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
  - **도서관**은 복사 및 대출·반납\* 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대출·반납은 세종도서관만 서비스 가능, 그 외 도서관은 복사 서비스 가능
    - 또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면 환경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이용자 중심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











### 4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물류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항공운송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를 공급(4.29)하여, 항공사, 수출입 중소기업, 포워더사 등 3자 모두 윈-윈 효과를 창출하였다.
    - \* 4.29일 아시아나항공(8:35분발(發), 충칭 왕복), 대한한공(22:00분발(發), 자카르타 편도)을 통해 각각 18톤씩 운송 (단가 기준, 수출액 4,010만 달러)
  - 해운의 경우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대체 장치장 확보, 대형선박** 미주· 유럽 노선 **추가 투입**, 해운사 **유동성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마스크 원·부자재 등 **총 12,014건** (4.22일 기준)에 대해 **신속통관 지원**을 하였다.
  - 또한 화물·트럭킹·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를 매일 10만 명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 무역협회 물류 포털을 확대·개편하고, 유럽·중국·베트남 등 '생생 수출입 물류 동향' 유튜브를 총 10편 게재하였다.
- □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입물류 대책반\*」(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을 통해 수출입 물류 관련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 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항공·선주·물류협(協 참)여(4.24~)
  - 또한 이번 특별 전세기 운항 모델을 상시 운영하고, 업종·지역별 추가 수요를 발굴해 제2·3차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자가격리 화자 생활수칙
  -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8. 마스크 착용법
  -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복지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처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